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자동차편



가이드라인 편집위원회

전문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부소장

정 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권병철** 과장, **김혜진** 연구관, **정창영** 주무관

공 공 한국소비자원 위해예방팀 **김인숙** 팀장, 소비자지향성팀 **김도년** 팀장

산업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윤경선** 상무, **도화정** 선임

산업계 현대자동차·기아 **송용환** 책임연구원, **이승현** 연구원

산업계 현대모비스 **전선용** 책임, **조이지** 책임연구원

산업계 한국지엠 **공소연** 차장

산업계 르노코리아자동차 **남태훈** 책임

산업계 KG모빌리티 **이채은** 책임

목차

Contents



제1부	추진 배경 및 제도 개요	1 추진 배경 및 가이드라인 의의	02
		2 가이드라인의 당사자	05
		3 살생물제 관리제도 개요	06



제2부	공통 가이드라인	1 용어 정의	12
		2 「화학제품안전법」의 목적과 핵심 규정	16
		3 규제 이행을 위한 중요 일정과 정보 확인 방법	23
		4 살생물처리제품의 구분 및 그에 따른 의무	36



제3부 이해당사자별 가이드라인

1 자동차 제작사의 살생물처리제품 관리	44
2 부품 공급사의 살생물처리제품 관리	55
3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살생물처리제품 관리	64



제4부 광고 및 주장의 사례

1 온라인 광고 및 주장	78
2 사용설명서 주장 사례	84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자동차편

제1부

추진 배경 및 제도 개요



추진 배경 및 가이드라인 의의



1-1

추진 배경 및 목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19.1 시행)에 따라 살균·살충·살서 등 유해생물의 제거, 무해화,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살생물물질·제품은 유해성·위해성을 사전에 입증·검증(승인)하여 안전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이 가능하며, 그 외에 보존이나 미생물 증식 억제 등 제품에 부수적인 목적을 위해 보존제 등으로 처리한 살생물처리 제품은 승인의 의무는 없지만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해야하는 등 법의 관리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한편, 자동차는 보존 또는 항균처리된 가죽시트·카매트·에어컨 필터·핸들 등 다양한 살생물처리 제품을 부품으로 하는 복합제품으로, 자동차 제조사 뿐 아니라 자동차 부품의 제조·수입사도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주체로서 「화학제품안전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외에 판매자·판매중개자·구매대행자도 적법한 살생물제를 취급하고 판매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살생물제품이나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해 산업계가 제도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용이 일정 기간 유예되고 있으므로**, 자동차 업계를 포함한 살생물제 취급 업체들이 사용하는 살생물물질을 적법 물질로 전환하거나 살생물처리제품에는 항균력을 주장하지 않는 등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표시·광고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동차에 많이 사용되는 보존 처리된 가죽, 섬유, 필터 등에 “항균”, “바이러스 제거”, “항균력 99.9%” 등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살생물제품의 승인에 대한 경과조치가 만료되는 시점부터는 미승인 살균제로 간주되어 불법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제조사 뿐 아니라 자동차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 제조·수입사에도 본 가이드라인을 배포·안내하여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의 경과조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의무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유통망 내 사용하는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신고·승인 여부 뿐 아니라 사용되는 부품의 표시·광고 내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꼼꼼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하는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을 적법한 살생물제로 제때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표시·광고의 경우 일단 시장에 출시되고나면 회수가 어렵고 수정이나 정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부적절한 표시·광고는 삭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환경부·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국내 완성차 5개사(현대자동차·기아, 한국지엠, 르노코리아자동차, KG모빌리티)가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자동차산업 이해 당사자별 살생물제 관련 의무와 이행사항에 대해 업계 여건을 반영하여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자동차편)」을 정부와 산업계가 손을 잡고 국내 최초로 마련하였습니다.

1-2

가이드라인의 의의

적법한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물질·제품·처리제품)의 제조·수입·판매·유통, 적절한 표시·광고, 제품의 안전성이나 효과에 대한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살생물제품·처리제품에 해당하는 다양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 부품의 제조·공급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관여되어 있어, 이해관계자별, 취급 살생물제별로, 경과조치별로 차별화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자동차 산업계 이해관계자별, 살생물물질·제품·처리제품의 경과조치 기간별 기업의 의무와 이행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수입사, 판매유통자 및 판매·중개업자를 포함한 유통망 내에서 「화학제품안전법」상의 살생물제 제도이행을 위한 노력, 비용의 중복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사업자들 스스로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

유통시 판매자의 추가적인 **광고내용**에 대한 **확인** 등 제조·수입·판매·유통자의 국민 안전에 대한 노력으로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의 안전성을 높일 뿐 아니라 **살생물물질(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환경, 살생물제로부터의 안전한 사회로의** 전환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에 대한 사전 안전성·효능 검증 제도는 유럽 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이미 운영 중인 제도로 본 가이드라인에 따른 처리제품의 안전기준(승인된 살생물제 사용) 및 표시·광고 이행시, **현재 시행 중인 미국·유럽 등의 살생물제 규제 수준**에도 부합하게 되므로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효과도 가집니다.

다만, 이 안내서는 향후 법령 등이 개정되거나 법률 유권해석, 정책적 판단이 변화되는 경우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현행 법률, 시행규칙, 고시 등이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든 자료로, 관련 법령 및 상위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법령과 상위규칙을 우선 적용합니다.

이 안내서는 환경부와 한국소비자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현대자동차·기아, 한국지엠, 르노코리아자동차, KG모빌리티, 현대모비스가 공동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제·개정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일시	비고
가이드라인 제정	2023년 11월 27일	

가이드라인의 이해당사자



다양한 부품으로 구성된 자동차의 경우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의 적법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이해당사자는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는 물론이고, 자동차 부품(자동차에 잔존하여 완성차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부자재 포함)을 공급하는 공급자, 그리고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도 포함됩니다.

살생물제 관리제도 개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모든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은 사전에 유해성·위해성을 검증하여 **안전하고 효과가 확인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이 허용됩니다.**

살생물물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효능 등의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살생물물질에 한해 제조·수입을 허용합니다.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는 자는 제품 내 함유 물질의 유해성, 제품 사용에 따른 노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안전성과 효능 평가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살생물제품에는 승인된 살생물물질(승인물질의 제조·수입사도 동일해야 함)**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품의 보존 또는 항균 등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보존제 등의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승인의 의무는 없지만,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승인된 용도에 맞게 사용**(안전 기준)하여야 하며, 처리제품의 효과를 알리려는 경우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개념 및 예시

살생물제	개념	예시
살생물 물질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	에탄올, CMIT/MIT 등
살생물 제품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 중 ①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②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소독제, 살충제, 살서제, 보존제 등

살생물처리제품 개념 및 예시

살생물제	개념	예시
살생물	제품의 주된 목적 이외에	보존처리된
처리제품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제품	에어컨 필터, 가죽, 플라스틱, 섬유 등

한편, 법 시행 전(19.1.1)에 국내 유통된 살생물물질은 산업계의 준비시간을 고려하여 기업이 환경부에 **기존살생물물질임**을 신고하여 승인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살생물물질의 용도·유해성·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22년부터 최대 '29년까지 승인유예**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승인된 기존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2년** 내에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국내 제조·수입·판매·유통이 가능합니다.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에 대한 **경과조치는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 +2년**이며,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을 질이 기존살생물물질로 고시되지 않았거나, 지정 해제·제조수입 금지시 해당 기간은 단축됩니다.

특히 동일한 살생물물질이라도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유형에 따라 승인유예기간이 달라지며, 이 물질을 사용한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의 경과조치 기간이 연동되어 달라지므로, **물질별·제품별 해당 살생물제품유형과 상세 승인유예기간, 승인 여부 등 확인이 중요합니다.**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유예기간	살생물제품 유형
~'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
~'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재용 보존제·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2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2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오염방지제

※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은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2년임. 다만, 기존살생물물질로 고시되지 않았거나, 지정 해제·제조수입 금지시 기간은 단축되므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고시 및 「화학제품안전법」부칙 제3조 및 제4조 확인 필요

승인된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이 사용된 살생물처리제품이라면 본격적인 경과조치는 '27년부터 시행되나, 만약 해당 제품이 살균·소독제·살충제·기피제 등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방법으로 주장하면 제품의 형태(섬유, 플라스틱, 가죽 등)와 상관없이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며, '25년 1월부터는 미승인된 살생물제품으로 처분될 수 있으므로, 살생물처리제품에는 처리제품에 부합하는 제한된 효과 주장만 가능합니다.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자동차편

제2부

공통 가이드라인



용어 정의



1-1

살생물제

살생물물질(「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7호)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이하 '제거 등')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합니다.

살생물제품(「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8호)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

- ◆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살생물처리제품(「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9호)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으로 처리한 제품을 말합니다.

1-2

광고와 주장

광고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등 살생물제의 정보, 사용 용도, 효과 등에 대해 다양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장

광고나 표시는 물론이고 기술자료, 사용지침이나 매뉴얼과 같은 정보에 포함된 문구, 표 또는 그림을 주장이라 합니다.

특히 효과·효능에 대한 주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

- ◆ 제품이 유해생물 또는 원치 않는 생물에 대해
어느 정도로 보호되고 있는지 드러내거나 암시하는 것
- ◆ 제품이 유해생물 또는 원치 않는 생물에 대해
특정 효능 또는 작용이 있는지 드러내거나 암시하는 것

1-3

제품의 살생물 기능과 목적

제품의 살생물 기능

제품이 가진 여러 기능 중 하나로서, **제품 이외의 대상(제품 사용자 등)**에 대한 유해생물 제거 등 의 기능을 말함

제품의 보호

제품에 대한 살생물처리의 효과를 뜻하며, **제품 자체의 부패 방지나 제품 자체에 대한 세균과 곰팡이의 성장 억제** 등을 말합니다.

※ 제품의 보호 효과는 제품 외부에 대한 영향이 없으므로 제품의 살생물 기능으로 보지 않음

제품의 주된 목적(살생물제품)

제품의 살생물 기능이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대중의 건강보호를 주장하는 경우
- ◆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의 부수적 목적(살생물처리제품)

제품에 살생물 처리를 하였지만, 제품의 부수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제품 자체의 보존이나 보호만 목적으로 하는 경우(대부분)
-

- ◆ 제품의 살생물 기능이 있지만 주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

제품에 대한 주장 중에서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생물을 제거 또는 억제하여 제품의 사용자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과 안전상의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명확히 드러내거나 암시하는 주장입니다.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의 판단 기준

가. (질병 예방) 사용자나 다른 사람들의 질병 예방 등의 효과를 주장하는 경우로, 특정 질병에 대한 효과 또는 통칭하여 ‘질병 예방’을 주장

나. (특정 유해한 생물 제거) 사용자나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하지 않지만,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생물의 종류를 명시하거나 해당 생물을 제거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제품의 보호를 위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다. (암묵적 주장) 제품의 보호를 위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인 항균 등 살생물 효과·효능을 주장하여 암묵적으로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을 하는 경우

주기능

제품의 여러 기능 중에서 해당 기능이 없을 경우 제품의 가치가 현격히 저하되는 기능 또는 다른 기능에 비해 특별히 강조한 기능을 말합니다.

주기능 판단 기준

가. 제품에서 살생물 기능이 없으면 제품의 가치가 현격히 저하되는 경우
(살균, 소독, 살충, 방충 등을 주장하는 경우 포함)

나.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유일한 기능인 경우

다. 제품의 명칭 또는 명칭의 위치에 항균이나 방충 등을 뜻하는 유사 용어
(제균, 항박테리아, 항바이러스, 항곰팡이, 항진드기 등)를 사용하는 경우

라. 살생물 기능을 주장하면서 99.9% 제거 등 구체적인 효능을 주장하는 경우

마. 제품의 기능 주장에서 살생물 기능이
굵은 글씨, 다른 글자체, 다른 색, 다른 위치 등 특별히 강조되는 경우

복합제품

원칙적으로 두 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은 복합제품입니다. 복합제품 중 하나의 부품이 살생물처리제품이고 그로 인해 복합제품의 살생물 효과와 효능을 주장할 경우 복합제품 제조·수입자는 법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판매시에 자동차 핸들에 항균처리를 하였다는 사실을 광고나 주장으로 소비자에게 알릴 경우 자동차 사용 안내서에는 핸들의 항균처리에 대한 안내(표시의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존살생물물질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로서 제조자나 수입자가 환경부장관(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고하여 환경부장관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한 물질을 말합니다. 고시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해당하면 법 제18조에 따라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이, 기존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현장발생 살생물제품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8호나목에 따라 설치된 현장에서 전기분해, 광분해 등의 반응에 의해 살생물물질을 발생시키는 살생물제품을 말합니다.

※ UV 살균은 화학물질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현장발생 살생물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나, UV와 촉매를 이용하여 살생물물질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현장발생 살생물제품에 해당

나노물질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10호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 ◆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
 - ◆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

2

「화학제품안전법」의 목적과 핵심 규정



2-1

「화학제품안전법」의 목적

「화학제품안전법」 제1조

「화학제품안전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2

「화학제품안전법」 적용 범위

「화학제품안전법」 제5조

「화학제품안전법」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적용대상으로 하지만, 다른 법에서 관리하는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와 다르게 제조, 수입, 판매, 유통되는 경우는 「화학제품안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 대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 [단,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
- ◆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水處理劑)
- ◆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單味飼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조사료(補助飼料)
-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처리물질
- ◆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 ◆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醫藥外品)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 ◆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 ◆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료기기
- ◆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5호,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이업자재 및 허용물질

2-3

살생물물질 승인 「화학제품안전법」 제12조제1항

살생물물질은 함부로 제조, 수입,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국립환경과학원고시))

단,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에 해당하면서(이하 “기존살생물물질”), 이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되는 경우에는, 승인유예기간 동안 물질승인을 받지 않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습니다(「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 제1항).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별표1)

2022년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 살생물제품 유형에 사용되는 12월 31일까지 살생물물질
2024년	목재용 보존제,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12월 31일까지 살생물제품 유형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2027년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12월 31일까지 살생물제품 유형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2029년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 · 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12월 31일까지 시설용 오염방지제 살생물제품 유형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 다만, 상기 승인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별표1) 제2호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이 단축·연장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최신 정보 및 대상 물질의 제조·수입사 확인 필요

2-4

살생물제품 승인

「화학제품안전법」
제20조제1항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살생물제품에는 승인받은 살생물물질 또는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국립환경과학원고시)만 사용해야 하며, 승인 받은 살생물제품만 시장 유통이 가능합니다. 기존살생물물질이 승인되는 경우, 물질의 승인유예기간으로부터 2년 이내에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제품의 유해성, 효능 시험자료 등 미리 제품승인 준비를 해야만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내에 승인완료가 가능합니다.(「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는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인 경우 물질의 승인유예기간 +2년이지만,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이 아니거나, 지정이 해제, 제조·수입이 금지된 경우,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가 단축됨(법 부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

다만 보존제 등의 살생물제품을 직접 제조·수입하지 않고 공급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 이후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 반드시 승인된 살생물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승인유예기간 이내라면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적법한 살생물제품인지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목재용 보존제,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2029년 12월 31일까지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2031년 12월 31일까지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 다만, 상기 승인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별표1) 제2호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이 단축·연장된 경우가 있으므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최신 정보 확인 후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 산정 필요

2-5

살생물제품 표시

「화학제품안전법」 제27조

- ◆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 ◆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 살생물제품의 사용에 따른 위험성 및 응급처치 방법
 - ◆ 살생물제품의 유통기한 및 폐기방법
 - ◆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
 -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살생물제품 걸면·포장에 표시사항

- | | | |
|----------------|----------------|--------------|
| · 제품명 | · 제조자, 주소, 연락처 | · 살생물물질 |
| · 살생물제품유형 | (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 | · 나노물질 |
| · 유통기한 및 폐기방법 | ·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 | · 기타화학물질 |
| · 중량·용량 | 수입자, 주소, 연락처 | · 제품 유해성·위험성 |
| · 효과·효능 | (수입 제품에 한함) | · 사용방법 |
| ·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 | ·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 | · 사용상 주의사항 |
| · 표준사용량 | (대상 제품에 한함) | · 승인번호 |
| | | · 제조번호 |

2-6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제1항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표시기준 경과조치기간이 지나면 살생물처리제품에는 승인받은 살생물제품만(수입 제품의 경우 유사성 기준을 충족) 사용해야 하며,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살생물처리제품만 시장 유통이 가능합니다.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준살생물물질인 경우(승인 물질 포함), 해당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으로부터 2년 이내에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살생물처리제품의 경과조치기간이 종료되기전에 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의 적법 여부, 표시·광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제도이행을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화학제품안전법」부칙 제3조제1항제1호)

안전기준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이 제품승인을 받은 것(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과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이 사용된 것)으로서 해당 제품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될 것

* 유사성 기준 : 외국정부의 승인 또는 확인 등을 통하여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이 해당 살생물제품유형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국내 승인된 물질로 승인된 살생물제품유형으로 사용될 경우 등

2-7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제2항

표시사항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 처리제품의 유해생물 제거 등에 대한 효과·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곁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사항

- ◆ 살생물제품이 사용되었음을 알리는 문구
-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질의 명칭 및 기능**
-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함유된 경우 그 함유 사실**
-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
※ 사용된 살생물질·제품 승인 시 부여된 처리제품의 표시사항(해당 경우에 한해 적용)

표시 방법

표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 방법

- ◆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 ◆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
(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
- ◆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 ◆ 살생물처리제품을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

안전·표시의무 이행 시기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표시의무는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으로부터 2년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화학제품안전법」부칙 제4조).

2026년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로 처리한 살생물처리제품

12월 31일까지

※ 다만, 공산품 등 일반적인 제품에 살생물처리를 할 때에는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를 사용할 일이 없으며, 대부분 보존제로 처리함

2028년	목재용 보존제,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12월 31일까지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로 처리한 살생물처리제품
2031년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로
12월 31일까지	처리한 살생물처리제품
2033년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12월 31일까지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로 처리한 살생물처리제품

※ 다만, 상기 승인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별표1) 제2호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이 단축·연장된 경우가 있으므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최신 정보 확인 후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의 경과조치 산정 필요

규제 이행을 위한 중요 일정과 정보 확인 방법



3-1

「화학제품안전법」 추진 경과 및 규제 이행을 위한 중요 일정

「화학제품안전법」은 2019년 시행되어 2031년까지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이 모두 완료됩니다. 해당 물질·제품을 제조·수입·판매·유통하는 업체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취급하는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에 대해 살생물제품유형별 승인유예기간을 고려하여 규제 이행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을 직접 제조·수입한다면 미리 승인준비를 하고 승인유예기간내 승인을 완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업체로부터 살생물물질·제품을 공급받는다면 승인유예기간 이후에는 공급받는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의 승인여부, 승인유예기간 이내라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여부 등 일정에 맞게 필요한 의무사항을 확인하고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목록은 고정된 정보가 아니라, 승인여부 등에 따라 변경되며, 특히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업체들의 자진취하·불승인 등의 이유로 물질 목록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고시된 물질 목록을 “3-2장의 적법한 살생물물질 확인 방법”에 따라 다시 확인하여 목록에 없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진 경과

2019년

법령	'19.1.1.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 '18년12월31일까지 시장에 유통된 살생물물질은 기존살생물물질로 신고, 고시되면 승인유예 대상
물질	~'19.6.30.	기존살생물물질 신고(827종 물질 신고)
	'19.11.15.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고시제정안 행정 예고(673종)
	~'19.12.11.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신고기간 운영
	'19.12.31.	기존살생물물질 최초 고시(741종) →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에 승인 물질 또는 승인유예대상 기존물질만 사용해야 할 의무 시작

2020년

법령	'20.3.24.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시행 → 신고·승인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 공개 규정 신설, 기존살생물물질 상시 신고제도, 포상금 제도, 척추동물시험 최소화 원칙 도입 등
물질	'20.8.24.	기존살생물물질 고시 개정(743종)
	'20.12.31.	신고된 기존살생물물질 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20.12.31.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021년

법령	'21.1.1.	하위법령 개정·시행 → 승인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품질관리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한시적 승인면제 절차 신설, 신고·승인 사항과 다른 효능 표시·광고 금지 등
물질	'21.1.26.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위임 (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
	'21.6.25.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

2022년

물질	'22.1.22.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
	'22.6.15.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
	'22.12.30.	기존살생물물질 중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 살생물제품유형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승인목록 발표 (48종 최종 승인)
	'22.12.31.	기존살생물물질 중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 살생물제품유형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종료

2023년

물질	'23.1.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
	'23.1.1.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 살생물제품유형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은 승인된 물질만 제조·수입·판매·유통할 의무 시작
살생물 제품	'23.12.31.	'22년12월까지 미승인된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는 '23년12월까지만 제조·수입·판매·유통 가능

※ 다만,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었으나, 그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이
제조·수입금지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둘 중 먼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까지만 해당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판매·유통이 가능하므로,
23년 12월 이전이라도 제조·수입금지 되는 제품도 있음

향후 일정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살생물제품 승인 경과조치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표시기준의 경과조치는 다음의 일정을 따르지만, 일부 물질의 경우 시행령(별표1) 제2호에 따라 승인유예 기간이 단축·연장된 경우가 있으므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업체가 취급하는 살생물물질의 용도(살생물제품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 확인하고, 만약 업체가 취급하는 살생물제가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한다면 법 부칙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경과조치를 따로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물질	'24.12.31.	기존살생물물질 중 목재용 보존제·기타 척추동물 제거제·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살생물제품유형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종료
살생물 제품	'24.12.31.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 종료(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및 구제제로 신고·승인된 제품이라도 이때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함)

2025년

물질	'25.1.1.	기존살생물물질 중 목재용 보존제·기타 척추동물 제거제·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살생물제품유형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은 승인된 물질만 제조·수입·판매·유통 해야 할 의무 시작
살생물 제품	'25.1.1.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 살생물제품은 승인된 제품만 제조·수입·판매·유통 해야 할 의무
	'25.1.1.	단순히 살생물처리가 된 필터, 섬유, 플라스틱, 목재, 전자제품 등의 제품이라도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 기능을 주장 (표시·광고 등)하는 경우, 살생물제품 으로 간주되어 살생물처리제품 이 아닌 미승인 살생물제품으로 처벌 시작

2026年

살생물 '26.12.31. 목재용 보존제·기타 척추동물 제거제·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제품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 종료

2027년

살생물 제품	'27.1.1.	목재용 보존제·기타 척추동물 제거제·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살생물제품은 승인된 제품만 제조·수입·판매·유통 할 의무 시작
	'27.1.1.	단순히 살생물처리가 된 목재 등의 제품이라도 목재용 보존제·기타 척추동물 제거제·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기능을 주장(표시·광고 등)하는 경우,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어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미승인 살생물제품으로 처벌 시작
처리 제품	'27.1.1.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로 처리한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승인받은 살생물제품 사용)·표시기준 위반시 처벌 시작 ※ 다만, 공산품 등 일반적인 제품에 살생물처리를 할 때에는 살균제·살조제·살서제·살충제·기피제를 사용할 일이 없으며, 대부분 보존제로 처리함
물질	'27.12.31.	기존살생물물질 중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살생물제품유형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은 승인된 물질만 제조·수입·판매·유통해야 할 의무 시작

2028년

물질	'28.1.1.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살생물제품유형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은 승인된 물질만 제조·수입·판매·유통해야 할 의무 시작
----	----------	--

2029년

처리 제품	'29.1.1.	목재용 보존제·기타 척추동물 제거제·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로 처리한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승인받은 살생물제품 사용)· 표시 위반시 처벌 시작
물질	'29.12.31.	기존살생물물질 중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살생물제품유형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종료
살생물 제품	'29.12.31.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 종료

2030년

물질	'30.1.1.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살생물제품유형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은 승인된 물질만 제조·수입·판매·유통할 의무 시작
살생물 제품	'30.1.1.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살생물제품은 승인된 제품만 제조·수입·판매·유통할 의무 시작
	'30.1.1.	단순히 살생물처리가 된 액상 제품, 섬유, 의류, 가죽, 플라스틱 등의 제품이라도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기능을 주장(표시·광고 등)하는 경우,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어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미승인 살생물제품으로 처벌 시작

2031년

살생물 제품	'31.12.31.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 종료
-----------	------------	--

2032년

처리 제품	'32.1.1.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로 처리한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사용) 표시 위반시 처벌 시작
살생물 제품	'32.1.1.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살생물제품은 승인된 제품만 제조·수입·판매·유통해야 할 의무 시작
	'32.1.1.	단순히 살생물처리가 된 건축자재, 재료나 장비, 박제물, 선박 등의 제품이라도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기능을 주장(표시·광고 등)하는 경우,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어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미승인 살생물제품으로 처벌 시작

2033년

처리	'34.1.1.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제품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로 처리한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승인받은 살생물제품 사용): 표시 위반시 처벌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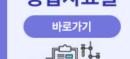
3-2

적법한 살생물물질 확인 방법

승인된 물질 또는 제품의 확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이 승인되면 「화학제품안전법」 제29조에 따라 승인된 살생물물질과 제품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https://chemp.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EMP 사이트에 링크한 후 첫 화면 상단의 ① 살생물제 메뉴로 가서, ② 살생물물질에서 8번째 메뉴인 ③ 승인 살생물물질 정보 공개를 누르십시오.

CHEMP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제도안내	전자민원	알림마당
기업은 편리한 민원처리, 국민은 안전한 화학제품 사용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제품신고	 승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규제품 승인신청	 물질승인 신청계서 제출	 물질승인 신청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종합자료실 비밀가게 	
CHEMP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제도안내	전자민원	알림마당

그러면, 현재 승인된 살생물물질 정보 공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살생물물질 정보공개						• HOME • 살생물제 • 살생물물질 • 승인 살생물물질 정보공개
• 검색어 •		• 전체 •		• 제품유형 •	• 관리 •	<input type="button" value="검색"/>
* 등록사용자 59건 (1.0)						
순번	정보공개번호 고유번호(AS No.)	살생물물질 명칭	사용가능 살생물제품 유형 및 기능	살생물물질 용도	활용승인 초기기간 (최초기간 만료일)	승인정보
1	2022-01 51-03-6	Piperonal Butoxide	살충제 (PT-05) - 살충제	전문사용자-다중이용시설(설내외), 일반사용자-주거시설(설내)	10년(2032.12.29까지)	<input type="button" value="상세보기"/>
2	2022-02 59-50-7	Chlorocresol	살균제 (PT-01) - 살균제, 살진균제	일반사용자-다중이용시설(설내)	10년(2032.12.29까지)	<input type="button" value="상세보기"/>
3	2022-03 64-17-5	Ethanol	살균제 (PT-01) - 살균제, 살진균제	전문사용자-산업시설(설내), 다중이용시설(설내), 일반사용자-다중이용시설(설내), 주거시설(설내)	10년(2032.12.29까지)	<input type="button" value="상세보기"/>
4	2022-04 67-63-0	Isopropyl alcohol	살균제 (PT-01) - 살균제, 살진균제	전문사용자-산업시설(설내), 다중이용시설(설내), 일반사용자-다중이용시설(설내), 주거시설(설내)	10년(2032.12.29까지)	<input type="button" value="상세보기"/>
5	2022-05 71-23-8	Propan-1-ol	살균제 (PT-01) - 살균제	일반사용자-다중이용시설(설내), 주거시설(설내)	10년(2032.12.29까지)	<input type="button" value="상세보기"/>
6	2022-06 77-92-9	Citric acid	살균제 (PT-01) - 살균제	전문사용자-다중이용시설(설내), 일반사용자-다중이용시설(설내), 주거시설(설내)	10년(2032.12.29까지)	<input type="button" value="상세보기"/>
7	2022-07 79-21-0	Peracetic acid	살균제 (PT-01) - 살균제, 살진균제	전문사용자-산업시설(설내외), 일반사용자-다중이용시설(설내외), 주거시설(설내외)	10년(2032.12.29까지)	<input type="button" value="상세보기"/>

살생물제품은 현재('23.11월)까지 승인된 살생물제품이 없어서 공개된 정보가 없으나, 살균제, 살충제 등의 승인유예기간인 24년 12월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승인된 살생물제품 정보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승인유예된 기존살생물물질 확인

「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에 따라 보존제를 포함한 많은 기존살생물물질의 유예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유예기간 중인 기존살생물물질의 목록은 국립환경과학원고시로,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https://www.nier.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 살생물물질의 제조·수입사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me.go.kr>) 공지사항 중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 및 승인유예대상 신고기업 목록 알림」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고시 내용 확인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첫 화면 상단을 보면 다음의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령정보 중 고시/예규/공고 메뉴를 누르십시오.

The screenshot shows the NIER website's main navigation bar at the top. Below it, a search bar contains the placeholder text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To the right of the search bar is a magnifying glass icon. Further right, there is a yellow ribbon-like graphic with the text "보안 나온 정부" (Safer Government Out). The main content area has several tabs: "Information Disclosure", "Research Area", "Law and Regulation", "Announcement/Notice", and "Institute Profile". The "Law and Regulation" tab is currently selected, indicated by a blue underline. A dropdown menu from this tab lists four items: "Announcement/Notice", "Administrative Approval", "Environmental Audit/Recognition", and "Analytical Agency Cert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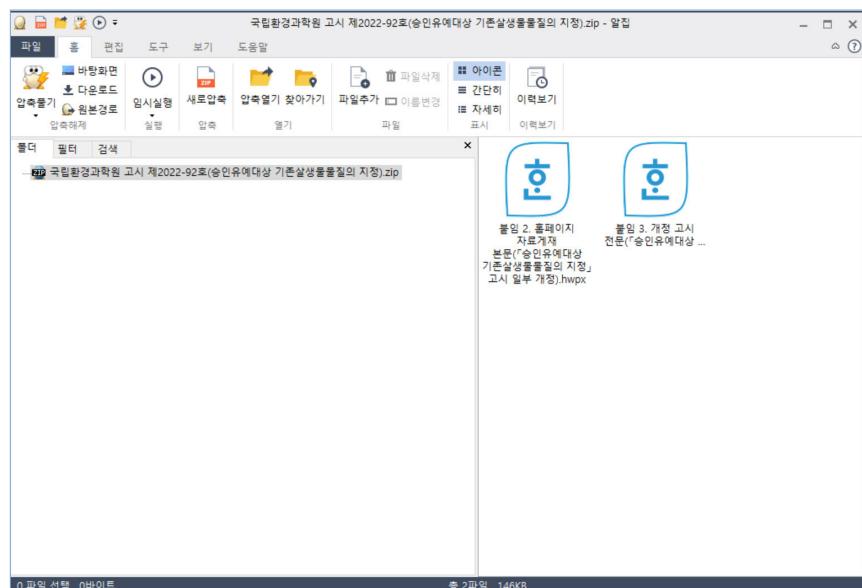
다양한 고시 목록이 공개되어 있어, 검색어로 검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법령정보 > 고시/예규/공고						
구분		제목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번호	구분	제목	담당부서	연락처	파일	등록일
1	환경부령 제433호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환경부령 제433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연속자동측정방법」 일부	환경부 정책총괄과	032-560-7219	2021-11-22	
1556	공고 제2024-12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물환경과학연구과	032-560-7427	2024-01-19	
1555	고시 제2024-6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위해성평가연구과	032-560-7219	2024-01-12	
1554	고시 제2024-2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위해성평가연구과	032-560-7219	2024-01-12	

검색어를 살생물물질로 하면, 다음과 같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최근 개정된 고시입니다. 여기에서 파일(클립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고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법령정보 > 고시/예규/공고						
구분		제목	살생물물질			
번호	구분	제목	담당부서	연락처	파일	등록일
13	고시 제2023-78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화학물질연구과	032-560-8427	2023-12-27	
12	고시 제2023-74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화학물질연구과	032-560-7196	2023-12-22	
11	고시 제2023-29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화학물질연구과	032-560-8475	2023-06-14	
10	고시 제2022-92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화학물질연구과	032-560-8475	2022-12-30	
9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25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화학물질연구과	032-560-8475	2022-06-15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압축파일인 경우, 압축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파일을 열면 한글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3. 개정고시 전문 파일을 열면 [별표]에 살생물제품유형별 승인유예기간이 적용되는 모든 기준살생물물질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유예대상 기준살생물불질(제2조 관련)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준살생물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 유예기간
1	2-(Acetyloxy)benzoic acid; O-Acetyl salicylic acid	50-78-2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12.31
			3-마. 건축자재용 보존제	2029.12.31
2	2-(2-butoxyethoxy) ethyl 6-propylpiperonyl ether; Piperonyl butoxide; PBO	51-03-6	2-다. 살충제	2022.12.31
3	Bronopol	52-51-7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3-나. 제품표면 용처리용 보존제	2027.12.31
			3-다. 섬유 가죽류용 보존제	2027.12.31
			3-라. 목재용 보존제	2024.12.31

3	Bronopol	52-51-7	3-마. 건축자재용 보존제 3-바. 재료 장비용 보존제 4-선박 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2029.12.31 2029.12.31 2029.12.31
4	2-Hydroxybenzoic acid monosodium salt; Sodium salicylate	54-21-7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5	Propane-1,2-diol; Propylene glycol	57-55-6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12.3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수입사 확인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https://chemp.me.go.kr>) 첫 화면에서 상단의 **알림마당** 메뉴의 **공지사항**을 누르십시오.

CHEMP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제도안내
전자민원
알림마당

기업은 편리한 민원처리, 국민은 안전한 화학제품 사용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기존살생물을질, 살생물을질 등의 신고·승인을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제품신고



승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규제품 승인신청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물질승인
신청

CHEMP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제도안내
전자민원
알림마당

<p>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제품신고 증명서 취득 문고드하기</p> <p>승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규제품 승인신청 신규제품 승인신청 변경승인·변경신고</p>	<p>기존살생물을질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p> <p>살생물을질 신생물을질 승인신청 물질등록증 인정신청 제주도제품 시판지로 부동의 확인 신청 신임액정신청 살생물을질 변경승인 살생물을질 변경신고 승인 살생물을질 정보공개</p> <p>살생물제품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살생물제품군 승인신청 제품승인 특례신청 제품유사성 인정신청 제주도제품 시판지로 국토의 생활 사용</p>	<p>권리의무 승계 중소기업 지원사업</p> <p>제조수입량보고 제조수입량보고 일괄 등록 FAQ</p> <p>수출업무 수출 요건확인번호 신청 수입요건 면제신청 자유판매증명</p>	<p>공지사항 미보완 제품공고 종합자료실 FAQ</p> <p>자료실 시스템소개 수출로안내 법령정보</p>
---	---	---	--

그리고,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학원), 살생물제 메뉴 중 **살생물제** 메뉴를 클릭한 후 공지사항 중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 및 승인유예대상 신고기업 목록 알림**」파일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공지	[공지] 2023년 충소기업 살생물제 승인자료 생산비용 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경정)	2023-07-18	-
공지	[공지] 카카오톡 채널 "살생물제 특례" 추가 방법 안내	2023-02-06	-
공지	[공지] 살생물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사용승인 신청 방법	2021-11-15	-
공지	[공지] 살생물물질 승인/살생물제품 승인/기존살생물물질 신고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	2021-01-22	-
공지	[공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고시 및 승인유예 대상...	2022-01-21	-

그러면 첨부파일 목록의 붙임 2.에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수입사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학제품안전법」 제12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일한 Cas No의 살생물물질이라도 승인받은 제조·수입사만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살생물제품 업체는 승인받은 살생물물질(승인 받은 제조·수입사의 물질이어야 함)을 공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공지사항 - 글조회

제목	[공지] 승인유예대상 기존설상물을질의_지정, 고시 일부 개정 및 승인유예대상 신고기법 목록 알림		
작성시간	2022-01-21	조회수	15236
1. 「생활환경학제적 및 살생물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환경체육안전법) 제 18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설상물을질의_지정」을 별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02호]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지정고시 제2조제2항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설상물을질의_지정관련 신고기법 목록」을 별법[2와 같이 공지합니다.]			
3. 「22년 승인 살생물질문제에 대한 정보는 [공지] 「22년 승인 살생물질 정보 및 주의사항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살생물질을 승인관련 제도 이행사항 추가안내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설상물을질에 대한 물질승인신청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제출기준[승인 신청서식]은 제출기준[승인 신청서식]을 찾으시면 됩니다. 제출기준[승인 신청서식]은 제출기준[승인 신청서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날짜를 찾으시고 날짜로 제출하여야 제출기한을 설정하되니 제출기한 내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공지사항 및 기타드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1800-4840, 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 [공지]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시스템 오픈 및 시스템 이용자 가이드 배포 안내(2020. 07. 08.)			
- [공지] 살생물을질승인 신청 시스템 오픈_안내 및 사용자 매뉴얼(2021. 06. 25.)			
 ※ 참고자료: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작성체제 실무가이드(2020. 07. 08.)			
 2.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승인유예를 받은 기업은 물질승인 공동체 험업체(동일 물질에 대하여 2개 이상 기업으로 구성되어 기밀해야 함)를 안내해드립니다. 다음의 공지사항 및 기타드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정보관리지원팀(02-5050-1314~15)으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목록			
첨부 1. 「승인유예대상 기존설상물을질의_지정, 고시 일부 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74호).xlsx」[140165 byte] 첨부 2. 「승인유예대상 기존설상물을질의_지정(주거기반)과 신고기법 목록[내보내기].xlsx」[300073 byte]			

4

살생물처리제품의 구분 및 그에 따른 의무



4-1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의 구분 방법

살생물제품

앞서 설명드린 1-3장(13쪽)에 따라 유해생물의 제거 등 제품의 살생물 기능이 주된 목적에 해당하여 살생물제품이 되는 경우는 ①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을 하거나, ②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 기능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을 하는 경우

대중의 건강보호 주장의 판단 기준은 **가.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거나, 나. 특정 유해 생물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다. 항균 등 모호한 표현으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암묵적 주장을 하는 경우입니다.**

구분	설명	사례
가. 질병예방	사용자나 다른 사람들의 질병 예방 등의 효과를 주장하는 경우로, 특정 질병에 대한 효과를 주장하거나 통칭하여 ‘질병 예방’을 주장	탈취 및 바이러스 억제로 질병 예방(에어컨 필터)
나. 특정 유해한 생물 제거	사용자나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하지 않지만,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특정 생물의 종류를 명시하거나 해당 생물을 제거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제품의 보호를 위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해세균을 제거하여 실내 공기를 안전하게 (에어컨 필터)
다. 암묵적 주장	제품의 보호를 위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인 항균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암묵적으로 대중의 건강을 보호 주장을 하는 경우	항균 핸들(핸들), 항균시트(시트커버)

②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인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가 제품의 주기능에 해당합니다.

구분	설명
주기능 가	제품에서 살생물 기능이 없으면 제품의 가치가 현격히 저하되는 경우 (살균, 소독, 살충, 방충 등을 주장하는 경우 포함)
주기능 나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유일한 기능인 경우
주기능 다	제품의 명칭 또는 명칭의 위치에 항균이나 방충 등을 뜻하는 유사 용어 (제균, 항박테리아, 항바이러스, 항곰팡이, 항진드기 등)를 사용하는 경우
주기능 라	살생물 기능을 주장하면서 99.9% 제거 등 구체적인 효능을 주장하는 경우
주기능 마	제품의 기능 주장에서 살생물 기능이 굵은 글씨, 다른 글자체, 다른 색, 다른 위치 등 특별히 강조되는 경우

살생물처리제품

살생물 기능에 대한 주장 여부와 상관없이 살생물처리를 하였으면, 살생물처리제품이 됩니다. 만약 살생물처리제품이 가진 살생물 효과에 대해 어떠한 주장을 하고 싶다면, 대중의 건강보호 등 살생물제품이 되는 주장을 하지 않아야 하고 단지, 제품보호를 위하여 살생물처리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며, 「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의 구분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은 아래의 순서도에 따라 구분하면 됩니다.

살생물처리제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제품의 차이는 다음과 같으며, 제품 구분에 따라 4-2장(39쪽)에 설명된 바와 같이 법적 의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살생물	살생물처리는 하였으나 어떠한 효과 주장도 없는 제품 (자동차 핸들에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처리가 되어 있지만, 항균처리에 대한 어떤 광고나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살생물 처리제품(1)	살생물처리를 하였고, 그 효과를 주장하는 제품 ("항균처리를 하여 자동차 핸들에 미생물이 자라는 것을 억제하며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돋습니다"와 같은 광고·주장이 있는 경우)



4-2

살생물처리제품 유형에 따른 법적 의무

- ◆ 살생물처리제품의 법적 의무는 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의 경과조치기간이 지나면 바로 적용되므로 미리 준비 필요
- ◆ 한편,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주장(항균 등)을 하면 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가 적용 → '24년 12월전에 부적절한 표시·광고 개선 필요

공통 의무

모든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자와 수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하는 살생물제품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승인된 용도 등 승인받은 범위에 맞게 사용(법 제28조)
- ◆ 처리제품 구매자 요청 시 사용된 살생물제품 정보 제공(법 제30조)
- ◆ 살생물제(물질, 제품, 처리제품)의 새로운 유·위해성, 효능 등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법 제36조)
- ◆ 기록 및 보존(법 제49조)

표시 의무

살생물처리제품의 효과·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상기의 공통 의무 이외에 추가적으로 법 제28조에 따른 표시기준 준수의 의무도 있습니다.

살생물	살생물처리의 효과와 효능을 주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처리제품(2)	「화학제품안전법」제28조제2항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추가됩니다.

한편, 특정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은 승인 단계에서 처리제품에 표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으로 처리한 경우는 효과나 효능을 주장하지 않는 살생물 처리제품(1)이라도 살생물물질·제품의 승인 단계에서 표시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법 제12조 및 제20조에 따른 보존제 등 살생물물질·제품 승인시 주의사항(알리지 유발물질, 에어로졸 제품에 대한 험량 제한 등) 등을 처리제품에 표시하는 조건으로 승인될 수 있음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화학제품안전법」제28조제2항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아래의 사항을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사항

- ◆ 살생물제품이 사용되었음을 알리는 문구
-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기능
-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함유된 경우 그 함유 사실
-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
※ 그 외 사용된 살생물물질·제품 승인 시 부여된 처리제품의 표시사항(해당 경우에 한해 적용)

또한, 제품에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나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앞서 2-7장(21쪽)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 방법

- ◆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 ◆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
(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
- ◆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 ◆ 살생물처리제품을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
(4-1.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의 구분 참조)

일반적으로 표시는 제품의 겉면에 합니다. 만약, 제품 겉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품 포장, 첨부문서, 라벨 또는 태그(꼬리표) 등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일부분이 살생물처리제품인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제품의 최소단위 포장에 표시하거나 사용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 경우 여러 가지 살생물처리제품을 부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좌석 커버가 항균처리된 가죽인 경우로 항균 기능을 주장하려는 경우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때, 자동차 좌석 커버에 표시하거나 사용설명서에 좌석 커버에 대한 살생물처리제품 표시사항을 표시하면 됩니다.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자동차편

제3부

**이해당사자별
가이드라인**



자동차 제작사의 살생물처리제품 관리



1-1

자동차 제작사를 위한 관리의 키포인트

자동차 제작사를 위한 관리의 키포인트

자동차 제작사가 향후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경과조치기간이 만료되어 본격적인 살생물제품 및 처리제품 관리를 하게되면 다음 세 가지 사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자동차는 살생물제품이 아니다.

자동차 자체가 살균이나 소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아닐 것입니다. 잘못된 표시·광고로 인해 자동차가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표시·광고 내용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둘째, 자동차는 살생물처리제품이 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부품 중에 살생물처리된 부품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수많은 부품은 살생물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품으로 만든 복합제품인 자동차도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합니다.

셋째, 효과·효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는 위험이 있다.

부품이나 자동차의 살생물처리 효과와 효능을 소비자에게 노출시킬 때, 과도한 표현을 사용하면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니라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어 미승인 살생물제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생물제품의 경과조치기간 이후에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살생물처리 제품에 적합한 광고와 주장을 해야 합니다.

1-2

자동차 제작사의 살생물제 안전관리 프로세스

자동차 제작사는 법에서 정한 살생물제품의 경과조치기한을 확인하여 적법한 살생물제품을 구매하여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며,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표시기준의 경과조치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해당 부품의 표면 또는 사용설명서에 법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해야합니다. 자동차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살생물제 안전관리 이행사항을 7단계로 정리했습니다.

단계	할일	세부 내용
1	목록 작성	- 자동차 부품(차량 내 잔존하여 완성차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부자재 포함)에 대해 살생물제품이나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하는 부품의 목록 작성
2	살생물제품인 부품에 대한 판단	- 자동차 부품이 살생물제품인 경우 자동차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계단계부터 안전성 등에 대한 신중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 필요
3	적법한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사용 여부 확인	-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 내) 살생물처리시 승인된 살생물물질 또는 승인유예된 기존살생물물질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 현행 및 기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과학원고시)를 확인하여 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적법여부 확인 필수
4	살생물처리제품 표시	-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 후) 살생물처리시 승인된 살생물제품을 승인된 범위내에서 사용하였는지 확인 ※ '25년 이후부터 승인된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유통 의무가 시작되므로 규제 이행 일정 확인 필요
5	고객을 위한 추가 정보 마련·제공	- 부품 중 살생물처리제품이 있을 경우 자동차 제작사도 표시의무 이행
6	적절한 광고와 홍보	- 「화학제품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소비자 요청시 살생물처리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7	관리기록 보관	- 살생물처리에 따른 효과와 효능을 주장하거나 광고할 경우 적절한 문구 선택 - 1단계부터 6단계까지의 모든 노력 및 「화학제품안전법」 제49조에 따라 처리제품에 사용한 살생물제품의 제품명과 사용량을 기록·보관하여 자동차 제작상의 의무 이행 입증

목록 작성

자동차 제작사와 살생물제인 부품(차량 내 잔존하여 완성차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부자재 포함) 공급자 간에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내에 함유된 살생물제의 정보 확인을 위해 아래의 서식을 참고하여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 서식은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망을 관리하여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인 부품을 잘 관리하기 위해 법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중 필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업체의 필요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

살생물제품 확인서 (예시)

○○○ 자동차 제작사 귀하

살생물제품 정보	품목명	부품 (부자재)명	살생물 제품유형	승인 여부	승인번호	제품 제조· 수입사	현장발생형 살생물제품일 경우 상세 내용
				<input type="checkbox"/> 승인	살생물제품 승인번호		
				<input type="checkbox"/> 유예	-		

살생물제품내 살생물물질 정보	살생生物 물질명	살생물물질 CAS No.	살생물 제품유형	승인 여부	승인번호/ 신고접수번호	물질 제조· 수입사	살생물제품내 살생물물질 함량(%)
				<input type="checkbox"/> 승인	살생물물질 승인번호		
				<input type="checkbox"/> 유예	기존살생물물질 신고접수번호		
				<input type="checkbox"/> 면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위의 살생물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적법한 살생물제품이며,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도 적법한 물질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기업 대표 ○○○ (인)

첨부 :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등

살생물처리제품 확인서 (예시)

○○○ 자동차 제작사 귀하

품목	부품 (부자재)명	처리에 사용된 살생물제품			살생물제품 내 살생물물질에 대한 정보		
		승인 여부	살생물 제품명	살생물 제품유형	살생물 물질명	살생물물질 CAS No.	제품내 살생물물질 함량(%)
		<input type="checkbox"/> 승인 <input type="checkbox"/> 유예 <input type="checkbox"/> 외국정부 승인·확인					
살생물처리 목적 및 처리방법							
광고 및 주장 문구							
1							
2							
3							
4							

위의 살생물처리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준수하였고,

처리제품에 부합하는 주장(광고 등)을 하는 살생물처리제품이며,

적법한 살생물제품과 살생물물질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기업 대표 ○○○ (인)

첨부 :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외국정부 승인·확인 입증자료 등

만약, 해당 부품 공급사가 처리제품 제조·수입사임에도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처리제품의 소비자로서 부품 공급사에 「화학제품안전법」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 제공 등)에 따른 정보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살생물제품인 부품 등에 대한 판단

자동차 자체가 살균이나 소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살생물제품은 아닐 것입니다. 잘못된 표시·광고로 인해 자동차가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표시·광고 내용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이 살생물제품인 경우 자동차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계단계부터 안전성 등에 대한 신중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상 적법한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 사용 여부 확인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에는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3조와 제4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승인된 물질 또는 승인유예된 기존살생물물질 및 승인된 살생물제품만 사용해야 합니다.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 확인서에 있는 살생물물질이 적법한 물질을 사용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확인
- ◆ 승인된 살생물물질 및 물질의 제조·수입사 정보 : CHEMP 공개 정보 확인
- ◆ 승인된 살생물제품 및 제품의 제조·수입사 정보(승인 후 공개예정) : CHEMP 공개 정보 확인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이 다가오면 업체가 승인을 포기하거나, 안전성 또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승인신청된 물질이 불승인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고시가 변경되므로 고시 개정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규제 일정에 따라 살생물제품은 승인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확인서에 명시된 살생물제품이 승인된 제품인지 유예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전에 해당 부품 공급사로부터 법령상 정해진 승인유예기간 내에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승인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유예기간 이후 불법 제품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 2025년 1월 1일부터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로 제조한 살생물제품은 승인된 제품만 제조·수입·판매·유통해야 할 의무 시작

-
- ◆ 2027년 1월 1일부터 목재용 보존제,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를 사용한 살생물제품은 승인된 제품만 제조·수입·판매·유통해야 할 의무 시작
 - ◆ 2030년 1월 1일부터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를 사용한 살생물제품은 승인된 제품만 제조·수입·판매·유통해야 할 의무 시작
 - ◆ 2032년 1월 1일부터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제·박제용 보존제,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를 사용한 살생물제품은 승인된 제품만 제조·수입·판매·유통해야 할 의무 시작
-

※ 다만, 상기 승인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별표1) 제2호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이 단축·연장된 경우가 있으므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최신 정보 확인 후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의 경과조치 산정 필요

자동차에 대한 살생물처리제품 표시

차량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차량 내 잔존하여 완성차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부자재 포함) 중 살생물처리제품이 있을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복합제품인 자동차에 대하여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표시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 ◆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핸들에 항균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자동차 판매시에 광고할 계획이 있다면, 법에서 정한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 핸들에 항균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광고할 계획이 없지만, 핸들 공급자가 이미 시장에서 살생물 효과와 효능을 광고하거나 주장하고 있다면 법에서 정한 표시를 하여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 다만, 핸들 공급자가 시장에 출시되는 핸들에 대해 항균처리된 효과를 주장한다면, 핸들이나 핸들 사용설명서 등에 법 제28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함
-
- ◆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자동차 핸들에 항균처리가 되어 있지만 핸들 공급자나 자동차 제작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광고나 주장을 통해 알릴 계획이 없다면, 법에서 정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 부품이나 장착된 제품에 살생물처리제품이 있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수단은 자동차 사용설명서가 적절합니다. 자동차 사용설명서에 살생물처리제품 목록을 제시하고, 처리제품 별로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정한 표시사항 정보를 표시기준에 맞게 제공하십시오.

고객을 위한 추가 정보 마련 및 제공

「화학제품안전법」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 제공 등)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을 구매한 자는 제품의 제조자나 수입자에게 살생물처리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청(「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소비자가 자동차 제작사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해당 정보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살생물처리제품의 제조자나 수입자는 45일 이내에 아래 서식(「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정보 제공·열람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이내
------	------	------	--------

청구인	성명(상호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청구 내용	청구대상 정보의 목록 및 범위		
	제공 방법	[] 제공	[] 열람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청구 이유			
용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 정보의 [] 제공, []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사업자 ○○○ 귀하

첨부서류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구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정보청구결과통지서

수신자 ○○○(우) 주소)

청구인	성명(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소재지)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청구 내용	청구대상 정보의 목록 및 범위	
제공 내용	제공 정보의 목록 및 범위	
	제공 정보의 수령 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 방문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팩스 전송 <input type="checkbox"/> 정보통신망 <input type="checkbox"/> 기타()
	열람 정보의 목록 및 범위	
	열람 일시 및 장소	
미제공 목록 및 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3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 청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귀하게 제공한 정보나 귀하가 열람한 정보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표시와 광고

자동차는 살생물처리제품에 부합하는 표시 및 광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살생물처리제품에는 대중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하며,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이 될 수 있는 표현이나 표현의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제조자 이외의 판매자가 판매할 때 자동차 제작사가 사용한 표시와 광고만 사용하도록 계약 또는 요청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판매 유통사의 잘못된 표시 광고로 인해 자동차 제작사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관리기록의 보관

1)부터 6)까지의 관리 노력에 대한 기록과 「화학제품안전법」 제49조에 따라 처리제품에 사용한 살생물제품의 제품명과 사용량 기록 등을 보관하여, 자동차 제작사가 「화학제품안전법」 이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것을 언제든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동차 제작사가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표시와 광고를 이행하였으나 다른 판매자가 자동차 제작사의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게 잘못된 광고를 사용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관리기록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1-3

자동차 제작사에 적용될 수 있는 「화학제품안전법」 처벌조항

법 제28조 안전·표시기준 위반

살생물처리제품에 적법한 살생물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승인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또는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및 승인유예 종인 살생물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판매금지,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제57조에 따라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될 수 있습니다.

살생물처리제품에 요구되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게 표시한 경우 법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판매금지,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제57조에 따라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 제30조 정보 제공 등 위반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자동차나 차량을 구성하는 살생물처리제품인 부품(차량 내 잔존하여 완성차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부자재 포함)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을 처리제품 제조·수입자에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후에 환경부장관의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 제34조 표시·광고의 제한 위반

자동차를 살생물제품처럼 광고하거나 주장한 경우 법 제58조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제품이 살생물제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살생물제품으로 승인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법 제5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 제49조 기록·보존의 위반

법 제49조에 따라 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제품명과 사용량에 대한 기록을 10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살생물처리제품의 제조·수입자는 법 제60조제1항제1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품 공급사의 살생물처리제품 관리



2-1

부품 공급사를 위한 관리의 키포인트

차량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차량 내 잔존하여 완성차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부자재 포함) 공급사의 살생물처리제품 관리에 있어 다음 세가지 사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차량을 구성하는 부품(차량 내 잔존하여 완성차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부자재 포함)이 살생물제품이라면, 사전에 독성시험, 위해성평가 등 면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국립환경과학원 승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 자체가 살균이나 소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살생물제품은 아닙니다. 잘못된 표시·광고로 인해 해당 부품이나 자동차가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표시·광고 내용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부품이 살생물제품인 경우 자동차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계단계부터 안전성 등에 대한 신중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 뿐 아니라 독성시험자료와 위해성평가자료 등을 구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후 승인이 된 경우에만 시장 출시가 가능합니다.

둘째, 차량을 구성하는 부품(차량 내 잔존하여 완성차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부자재 포함)이 살생물처리제품인 경우 자동차도 살생물처리제품이 되므로, 자동차 제작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수많은 부품은 살생물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품으로 만든 복합제품인 자동차도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부품에 대하여 살생물처리제품 여부를 확인하고, 적법한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으로 처리하였는지 검토할 것입니다.

부품(차량 내 잔존하여 완성차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부자재 포함) 공급사에서는 자동차 제작사의 검토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살생물처리제품의 효과나 효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는 위험이 있다.

부품의 살생물처리 효과와 효능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과도한 표현을 사용하면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니라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품 공급사 뿐 아니라 자동차 제작사도 함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품 공급사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광고와 주장을 해야 합니다.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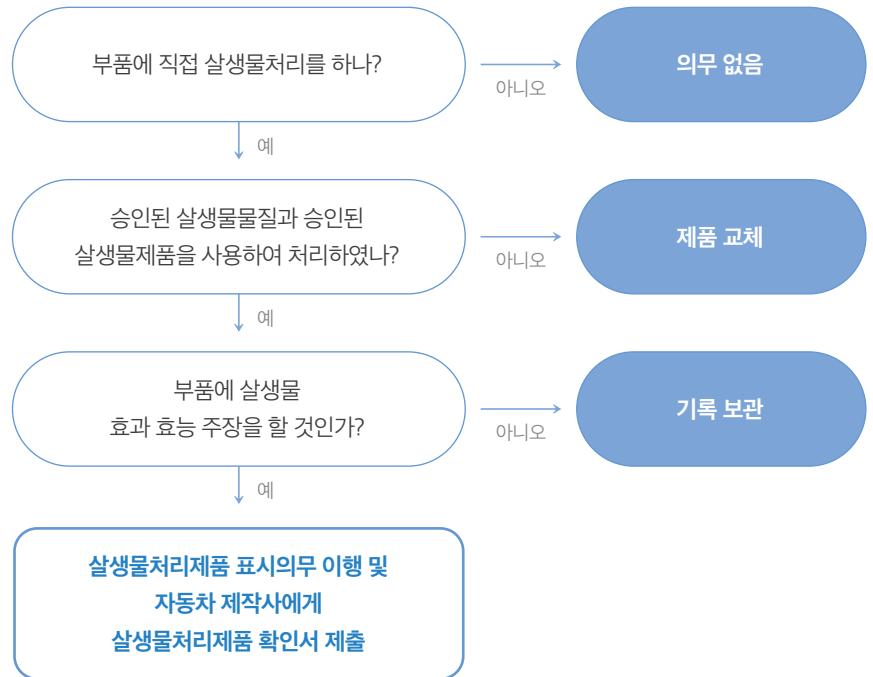
부품 공급사의 책임과 역할

부품(차량 내 잔존하여 완성차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부자재 포함) 공급사는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정한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적법한 살생물제품을 구매하여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며, 공급하는 부품이 살생물처리제품인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게 법에서 정한 표시의무와 함께 살생물처리제품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급하는 부품이 살생물처리제품인 경우는 부품의 제작과정에서 ① 살생물제품을 구매하여 직접 살생물처리를 하였거나, ② 살생물처리제품인 직접부자재를 구매해서 사용한 경우입니다. 각각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책임을 이행해주십시오.

부품 공급사에서 직접 살생물처리를 하는 경우 프로세스

부품(차량 내 잔존하여 완성차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부자재 포함)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공급사가 직접 살생물처리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관리를 하면 됩니다. 이때 살생물처리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과 살생물물질이 적법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품에 대해 살생물처리의 효과와 효능을 주장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부품의 살생물처리 효과와 효능을 주장하거나 광고할 의향이 있다면 자동차 제작사에게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이 서식은 살생물처리제품인 부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법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중 필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제작사의 필요에 따라 항목은 추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살생물처리제품 확인서 (예시)

○○○ 자동차 제작사 귀하

품목	부품 (부자재)명	처리에 사용된 살생물제품			살생물제품 내 살생물물질에 대한 정보		
		승인 여부	살생물 제품명	살생물 제품유형	살생물 물질명	살생물물질 CAS No.	제품내 살생물물질 합량(%)
		<input type="checkbox"/> 승인 <input type="checkbox"/> 유예 <input type="checkbox"/> 외국정부 승인·확인					
살생물처리 목적 및 처리방법							
광고 및 주장 문구							
1							
2							
3							
4							

위의 살생물처리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준수하였고,
처리제품에 부합하는 주장(광고 등)을 하는 살생물처리제품이며,
적법한 살생물제품과 살생물물질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기업 대표 ○○○ (인)

첨부 :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외국정부 승인·확인 입증자료

만약 부품 공급사가 자동차 제작사에 부품을 납품할 때 부품의 살생물 효과나 효능을 주장할 의향이 없다면, 제작사에게 살생물처리제품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하는 부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기록 및 보존의 의무가 있으며, 자동차 제작사에서 법 제30조에 따른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니 부품의 살생물처리 관련한 정보 등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부품 공급사가 살생물처리를 위해 보존제 등 살생물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한다면, 살생물제품 공급자로부터 다음의 확인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단, 이 서식은 자동차 부품 공급사가 구매하는 살생물제품을 잘 관리하기 위해 법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중 필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업체의 필요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

살생물제품 확인서 (예시)

○○○ (부품공급사) 귀하

살생물제품 정보	품목명	부품 (부자재)명	살생물 제품유형	승인 여부	승인번호	제품 제조·수입사	현장발생형 살생물제품일 경우 상세 내용
				<input type="checkbox"/> 승인	살생물제품 승인번호		
				<input type="checkbox"/> 유예	-		

살생물제품내 살생물물질 정보	살생生物 물질명	살생生物 물질 CAS No.	살생生物 제품유형	승인 여부	승인번호/ 신고접수번호	물질 제조·수입사	살생生物제품내 살생生物물질 함량(%)
				<input type="checkbox"/> 승인	살생生物물질 승인번호		
				<input type="checkbox"/> 유예	기존살생生物물질 신고접수번호		
				<input type="checkbox"/> 면제	위해성이 낮은 살생生物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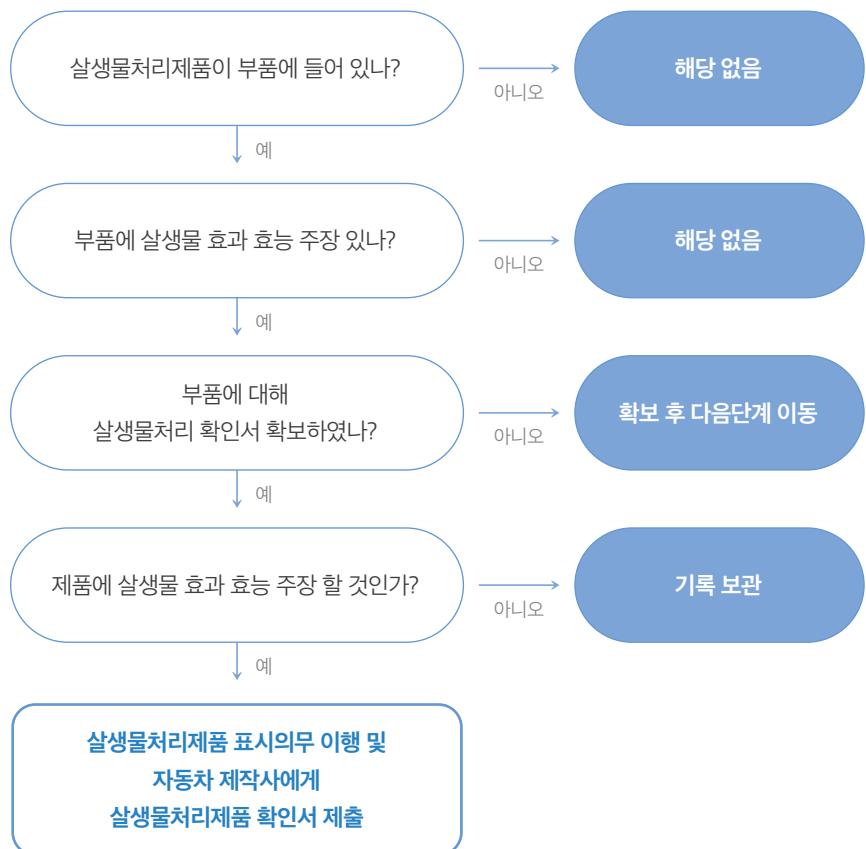
위의 살생물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 제20조,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승인되거나 승인유예된 적법한 살생물제품이며,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도 적법한 물질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기업(살생물제품 공급사) 대표 ○○○ (인)

첨부 :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생물처리제품인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 프로세스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는 부품이지만, 공급사 입장에서는 제품입니다. 위의 프로세스는 공급사 입장에서 자신의 제품에 대해 살생물처리제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부품 공급사가 자신의 제품(부품)에 대해 살생물처리제품으로서 효과와 효능을 주장할 것이나 하는 점입니다. 부품 공급사가 살생물처리제품으로서 효과와 효능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자동차 제작사에게 살생물처리제품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제품에 대해 살생물처리제품으로서 효과와 효능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자동차 제작사에게 살생물처리제품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품 공급사가 부품의 생산과정에서 제3의 업체(부품의 부품 공급사)로 부터 살생물처리제품인 부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체로부터 살생물처리제품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살생물처리제품 확인서 (예시)

○○○ (부품공급사) 귀하

품목명	부품 (부자재)명	처리에 사용된 살생물제품			살생물제품 내 살생물물질에 대한 정보		
		승인 여부	살생물 제품명	살생물 제품유형	살생물 물질명	살생물물질 CAS No.	제품내 살생물물질 함량(%)
		<input type="checkbox"/> 승인 <input type="checkbox"/> 유예 <input type="checkbox"/> 외국정부 승인·확인					
살생물처리 목적 및 처리방법							
광고 및 주장 문구							
1							
2							
3							
4							

위의 살생물처리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준수하였고,
처리제품에 부합하는 주장(광고 등)을 하는 살생물처리제품이며,
적법한 살생물제품과 살생물물질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기업(부품의 부품공급사) 대표 ○○○ (인)

첨부 :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외국정부 승인·확인 입증자료

부품의 부품 중에 살생물처리제품이 있지만 생산된 부품의 살생물 효과나 효능을 주장할 의향이 없다면, 부품 공급사는 자동차 제작사에게 살생물처리제품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하는 부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기록 및 보존의 의무가 있으므로, 살생물처리한 정보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자동차 제작사에서 법 제30조에 따른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니 부품의 살생물처리 관련한 정보(확인서) 등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품 공급사가 공급하는 부품의 살생물 효과나 효능을 주장할 의향이 있다면, 상기(58쪽) 확인서를 자동차 제작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표시와 광고

부품사는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표시 및 광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살생물처리제품에서는 대중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하며,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이 될 수 있는 표현이나 표현의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3

부품 공급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 「화학제품안전법」 처벌조항

법 제28조 안전·표시기준 위반

살생물처리제품에 적법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승인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또는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및 승인유예 중인 살생물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판매금지,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제57조에 따라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될 수 있습니다.

살생물처리제품에 요구되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게 표시한 경우 법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판매금지,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제57조에 따라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 제30조 정보 제공 등 위반

자동차 제작사가 살생물처리제품인 부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였으나 공급사에서 이를 거부하고 이후에 환경부장관의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 제58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 제34조 표시·광고의 제한 위반

부품을 살생물제품처럼 광고하거나 주장하면 법 제58조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제품이 살생물제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살생물제품으로 승인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법 제5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 제49조 기록·보존의 위반

법 제49조에 따라 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제품명과 사용량에 대한 기록을 10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살생물 처리제품의 제조·수입자는 법 제60조제1항제1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살생물처리제품 관리



3-1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 관리의 키포인트

전자상거래로 유통되는 자동차는 살생물제품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차량 내 잔존하여 완성차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부자재 포함)도 살생물제품이 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사이버몰에서 자동차 부품이 아닌 소모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모품이 화학제품일 경우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살생물제품에는 승인된 살생물물질을 사용해야 하며, 살생물제품 자체도 환경부장관(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살생물처리제품이 과대광고나 주장으로 인하여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표시와 광고 내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하는 제품이 자동차, 부품, 소모품 가운데 어느 것 이건 간에 제품 제조·수입자가 사용한 살생물 효과와 효능에 대한 광고나 주장을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임의로 살생물 효과와 효능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주장하여 자동차 제작사나 부품사 등에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발생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자동차, 부품, 소모품 등의 제품 제조·수입자가 사용한 살생물 효과와 효능에 대한 광고나 주장에 대해 올바른 표현을 하였고, 제품 제조·수입자가 자신의 제품에 대해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변경하거나 추가한 광고나 주장 등 영업활동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전제합니다.

3-2

통신판매업자의 책임과 역할

통신판매업자의 법률적 지위 확인 및 제품 제조자의 주의사항

누구나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차량 내 잔존하여 완성차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부자재 포함)의 판매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품 제조·수입자가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을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를 한 것이 되고 이를 업으로 하였다면 **통신판매업자**가 되는 것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만일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제조·수입자가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통신판매하지 않고, 유통 사업자를 통해서 판매하였다면 유통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이 경우 **제품의 제조·수입자가 유통 사업자에게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을 제공하면서, 「화학제품안전법」에 부합하는 광고와 주장도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유통 사업자가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하는 광고 및 주장을 했고 이 내용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 제조·수입자가 제공한 잘못된 광고 및 주장에 근거한다면, 유통 사업자와 제품 제조·수입자 모두 제재의 대상이 되며, 유통 사업자는 제품 제조·수입자가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품 제조·수입자는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광고나 주장을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정확히 하여, 유통 사업자의 잘못된 광고 및 주장으로 인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품 제조·수입자는 자신의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내부 자료를 만들어 유통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비록 제품 제조·수입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광고나 주장을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유통 사업자의 잘못된 광고 및 주장의 근거가 되므로, 이로 인해 법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살생물제품의 판매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하는 부품과 소모품 중에는 살균제, 보존제 등의 살생물제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살생물제품이 승인받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승인된 내역과 다른 주장(효능, 용도 등)을 하는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살생물제품의 이용자의 사용 후기에 회신하는 경우도 광고에 해당하는 만큼 살생물제품의 벗어나는 주장을 해서는 안됩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직접 한 광고 및 주장 때문에 살생물처리제품이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그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가 추가한 광고 및 주장이 살생물제품의 승인된 바와 다를 경우도 그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도 통신판매업자가 집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

통신판매업자가 살생물처리제품인 자동차, 부품, 소모품을 통신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표시 및 광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통신판매업자가 살생물처리제품인 자동차, 부품, 소모품에 대하여 임의로 대중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광고 및 주장을 하지 않아야 하며,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기능이 될 수 있는 표현이나 표현의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즉 통신판매업자가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해 위와 같은 광고와 주장을 하게 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높고, 「화학제품안전법」에도 저촉됩니다.

더 나아가 통신판매업자가 제품 제조·수입자가 주장하지 않은 살생물 효과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일 통신판매업자가 살생물처리제품인 자동차, 부품, 소모품 등에서의 살생물 효과를 주장한다면 표시광고법 제3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제품 제조·수입자가 사용하는 광고 및 주장을 넘어서 광고 및 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3-3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와 역할

통신판매중개자의 법률적 지위 확인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가 아닙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1항), 통신판매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인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제1항).

그러나 위와 같은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중개자이면서 동시에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할 때에는 통신판매업자에 준하는 책임**을 부담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제3항).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관련 책임을 진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한 경우에도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제3항).

※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 여부는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신판매업자로 생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7호)을 참고해 주십시오.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지위를 가진다면 ‘3-2. 통신판매업자의 책임과 역할’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통신판매업자의 상품등록시 주의사항 고지를 통한 「화학제품안전법」 준수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와 **상품정보를 등록 및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를 의뢰한 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통신판매 의뢰자와 함께 연대책임이 발생하게 되며(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2), 통신판매중개를 위해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재화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4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15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상품정보를 등록할 때 아래와 같은 정보를 고지한다면, 통신판매업자가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사이버 몰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이버 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를 준수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자의 통신판매행위를 약관에 근거하여 중단할 수 있다는 중요한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상품정보 등록 전후로 다음 내용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등록 전에는 반드시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 ① 통신판매업자는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제조·수입자의 표시·광고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여 등록해서는 **안된다**는 주의사항
- ② ①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화학제품안전법」 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주의사항(「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 등)
- ③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등록한 상품정보가 「화학제품안전법」 상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약관에 근거하여 중개 중단 등 제재할 수 있다는 주의사항**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통신판매업자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약관에 명확히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상품등록시 사전고지는 해당 약관의 핵심 내용과 관련 조항을 명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업자 사이의 계약 관계를 통한 「화학제품안전법」 준수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계약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사이버몰 이용약관에 통신판매업자의 잘못된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광고 및 주장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통신판매 중개를 중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미승인 또는 표시 기준을 위반한 살생물제품,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해서도 통신판매중개를 중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환경부 등 관계행정기관이 통신판매업자의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의 위반을 이유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중개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를 위반한 통신판매업자를 제재하기 위한 약관의 구성에 정해진 형태는 없지만, 통신판매업자를 제재하기 위한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① 제재 목적의 정당성, ② 제재 사유의 객관성, ③ 제재 내용의 적정성 등의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임의적 판단으로 자의적인 제재를 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정당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중개사업자가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를 위반한 통신판매업자를 제재하기 위한 약관은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 사이의 약관 내용 중 “금지행위”와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는 통신판매업자의 “책임과 의무” 규정에 나누어 규정될 수 있으며, 통신판매업자의 “제재조치”는 “제재절차”와 구분하여 규정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의 약관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 약관은 예시에 불과합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약관에 명확하게 표현하면 됩니다.

예시 :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 사이의 ‘약관’ 중 관련 내용 예시

제0조(통신판매업자의 책임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관리의무)

- ① 사이버몰에서 재화와 용역의 판매는 통신판매업자의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 가능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재화와 용역에 관한 상품정보를 직접 등록, 관리해야 합니다.
※ [참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상품정보 관련 광고 및 주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이 통신판매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제4항) 이와 같은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 대한 재산적 책임을 부담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하여 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 ②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 등 사이트에서 상품과 용역의 판매와 관련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③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의 법령과 약관 위반 등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으며,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관리행위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명 요청에 답변 및 필요 최소한의 증빙자료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 ④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법령과 약관을 위반한 통신판매업자에 대한(또는 동 약관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0조(금지행위)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통신판매 부적합 상품의 등록·판매를 금지합니다.
1.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금지행위 …

제0조(제재 절차 및 조치)

- 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자의 금지행위를 다음의 각호의 방법으로 인지하였을 경우, 제재조치에 앞서 통신판매업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단체·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의 요청
 2.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사이버몰의 등록상품 관리
 3. 사이버몰 이용자의 신고
 4. 기타 제보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의 **요청내용이 위해 방지의 목적인 경우, 소명에 앞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위해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해당 조치를 해제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00일 이내에 소명해야 합니다.
- ④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제재조치 유형	금지행위 유형	비고
1. 통신판매중개업자 개선권고		경미한 안전·표시기준 위반
2. 서비스 제한 1 (전시, 검색, 광고 제한)		중요한 안전·표시기준 위반
3. 서비스 제한 2 (등록, 판매, 증개 제한)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따른 증개제한 요청 등에 근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 및 소비자 위해정보에 따른 증개제한 요청 등에 근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법령 위반사항 공표 (거래자 개별공지, 일괄공표)		소비자 위해가능성이 높은 경우, 거래기록에 근거한 개별통지 소비자 위해가능성이 낮지만, 주 의 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일괄 공표
5. 거래취소(환불 포함)		중대한 법률위반
6.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 계약해지		중대한 법률위반으로 통신판매 증개자 책임발생
7. 재가입 차단		중대한 법률위반으로 통신판매 증개자 책임발생 및 상습기준 초과

※ 안전·표시기준 위반의 정도, 소비자 위해가능성의 정도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 등 전문기관의 견해를 참고할 수 있다고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이버몰 관리행위를 통한 「화학제품안전법」 준수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입력하는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 중 잘못된 광고 및 주장이 없는지 관계기관에 주기적으로 확인을 받고, 잘못된 광고 및 주장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정보의 삭제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정정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제2항).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제2항에서는 동법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을 금지하는데, ①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②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만 면책될 수 있습니다.

- ◆ 통신판매중개자의 발견하는 즉시 삭제의무는 사용약관의 금지행위 및 제재절차 및 조치 내용에 반영하고 실행함으로써 이행이 가능하고,
- ◆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정보를 토대로 리콜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된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광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제1항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소비자에 대한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제4항)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행위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상당한 주의인 동시에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통신판매업자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는 행위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제4항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재산적 손해를 유발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책임을 부담하지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주기적인 관리행위는 사이버 몰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신의 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4

판매자 등에 적용될 수 있는 「화학제품안전법」 관련 조문 보기

제조·수입자의 법 제20조, 제28조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 등 의무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 제28조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승인등을 받은 경우, 제품승인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법 제26조에 따라 제품승인등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살생물처리한 제품임에도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과도한 주장을 하면 미승인 살생물제품으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조·수입·판매·유통자의 법 제34조에 따른 표시·광고의 제한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제품을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등 법 제34조의 표시·광고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법 제5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제품이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지 않았으나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확인되는 경우 미승인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므로,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법 제34조에 따른 표시·광고의 제한은 「화학제품안전법」 상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도 적용되며, 상기 내용 뿐 아니라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무독성”, “환경친화적” “무해성” 등의 문구의 사용도 금하고 있음

만약 살생물제품에 해당함에도 제품승인등(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을 받지 아니하거나, 법 제26에 따라 제품승인등이 취소되거나 제조·수입이 중지된 살생물제품, 법 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은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법 제

37조에 따른 회수명령 및 판매금지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법 제56조에 따라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판매·유통자의 법 제35조에 따른 판매 등의 금지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제품승인등(법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받지 아니하거나, 주장·광고하는 살생물제품유형(살충제, 살균제, 보존제 등)에 부합하게 승인을 받지 않아 미승인 살생물제품, 법 제26조에 따라 제품승인등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이 중지된 제품, 법 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은 살생물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면 법 제37조에 따른 회수명령 및 판매금지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법 제58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 법 제35조에 따른 판매 등의 금지는 살생물제품이나 살생물처리제품 뿐 아니라 「화학제품안전법」상의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조·수입·판매·유통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살생물처리한 제품임에도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과도한 주장을 하면 미승인 살생물제품이 될 수 있으며, 판매자가 임의로 제품의 표시·광고 내용을 변경하면 그 책임이 판매자에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살생물처리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면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매금지 등의 행정처분과 법 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법 제3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판매를 증개하거나 구매대행하는 자에게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판매금지 등의 행정처분과 법 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판매 등의 금지)의 내용

항	각호	각호의 내용
①항	1. 생활화학제품의 판매 등의 금지	가.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법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 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 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법 제10조제4항) 라.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법 제10조제8항)
	2. 살생물물질의 판매 등의 금지	가. 물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물질 나.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법 제17조)
	3. 살생물제품의 판매 등의 금지	가. 제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나.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이 중지된 살생물제품(법 제26조) 다.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살생물제품(법 제27조)
	4.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 등의 금지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살생물처리제품(법 제28조)
②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를 대행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조·수입·판매·유통자의 법 제37조에 따른 회수명령 등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판매 등이 금지되는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에게는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회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조·수입·판매·유통자의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한 포상금

또한,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를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판매·유통한 자는 법 제52조의 2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자동차편

제4부

광고 및 주장의 사례



온라인 광고 및 주장 사례



1-1

핸들 및 핸들 그립

제품명 | 핸들그립(핸들커버)

사이버몰 판매 제품명 | 항균 핸들그립 핸들커버 공용



광고 문구

- ① 항균처리 원단 사용
- ② 운전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만져야 하는 자동차 핸들이기에 핸들도 위생을 생각해 산화아연 힘침된 항균처리 원단을 사용한 핸들커버입니다.
- ③ 안전을 위한 항균처리된 원단으로 만들어진 핸들그립 핸들커버는 부드러운 고급 합성가죽의 매트한 질감과 타공그립원단의 디자인으로...
- ④ 꼼꼼한 마감! 뛰어난 내구성! & 항균처리원단

검토결과 및 권고

제품명 제조사에서 사용한 제품명은 문제 없으나, 사이버몰에서 통신중계판매업자가 제품명에 항균을 추가함으로써, 살생물기능이 '주기능'인 살생물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광고 제조사에서 사용한 광고는 모두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한 광고이며, 사이버몰에서 통신중계판매업자가 추가한 광고는 없었음

권고 · 사이버몰에서 “제품명”에 “항균”을 추가한 것 삭제

시트 및 시트커버

제품명 | 자동차시트

사이버몰 판매 제품명 | 자동차 항균 시트커버



광고 문구

- ① 항균처리 원단 사용
- ② 사계절 온갖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자동차 안... 그중에 가장 많은 사용성으로 인해 세균에 노출되어 있는 시트. 땀이 나 각종 오염으로부터 위생을 생각해 자동차시트는 (Ag)실버를 적용한 항균처리된 원단을 사용하였습니다.
- ③ 실버를 적용한 항균처리된 원단 사용으로 제품을 보호하고 섬유 가죽류용 보존제로 우수합니다.
- ④ 땀이나 각종 오염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자동차. 세탁도 쉽지 않고 물티슈로 닦아도 불안하셨죠? 자동차시트는 항균 처리된 원단으로 제작하였습니다.
- ⑤ 항균처리 원단 사용. 제품보호, 보존.
- ⑥ (Ag)실버 적용으로 제품을 보호하고 보존합니다.
- ⑦ 항균처리 원단을 이용하여 제작해 각종오염과 세균으로부터 자동차시트는 쾌적한 자동차 실내를 제공합니다.

검토결과 및 권고

제품명 제조사에서 사용한 제품명은 문제 없으나, 사이버몰에서 통신중계판매업자가 제품명에 항균을 추가함으로써, 살생물기능이 ‘주기능’인 살생물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광고 ①번-⑥번 광고는 살생물처리제품에 적합
⑦번 광고는 항균처리 시트로 인해 쾌적한 자동차 실내를 제공한다고 하여 건강 보호 주장에 해당될 수 있음(살생물제품으로 해석 우려 있음)

사이버몰에서 추가한 광고는 없었음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몰에서 “제품명”에 “항균”을 추가한 것 삭제 · ⑦번 광고는 삭제하거나 “항균처리 시트로 인해 쾌적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정도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

1-3

차량용 에어컨/ 히터 필터

제품명 | 공기청정 에어컨 히터 필터

사이버몰 판매 제품명 |

공기청정 항균 활성탄 차량용 에어컨 히터 필터



광고 문구

① 99.9% 강력 항균 효과

② **99.9%**



③ 고분자 항균층

④ 항균

⑤ 99.9% 강력 항균 파워

⑥ 필터 원단 내부에 오염된 세균에 대한 99.9%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⑦ 항균 코팅막으로 냄새 걱정 없는 안심 필터!

검토결과 및 권고

제품명 제조사에서 사용한 제품명은 문제 없으나, 사이버몰에서 통신중계판매업자가 제품명에 항균을 추가함으로써, 살생물기능이 '주기능'인 살생물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광고 ①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광고) '99.9%'라는 구체적 효과·효능 주장이 있으므로 주기능(라)에 해당하고, '항균 효과'는 제품보호를 언급하지 않은 모호한 항균 주장으로 대중의 건강보호(다)에 해당

②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광고) '99.9%'라는 구체적 효과·효능 주장으로 주기능(라)에 해당

③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광고) '고분자 항균층'은 제품보호를 언급하지 않은 모호한 항균 주장으로 대중의 건강보호(다)에 해당

④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광고) '항균'을 단독적으로 사용하면서 제품보호를 언급하지 않은 모호한 항균 주장으로 대중의 건강보호(다)에 해당

⑤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광고) '99.9%'라는 구체적 효과·효능 주장이 있으므로 주기능(라)에 해당하고, '항균 파워'는 제품보호를 언급하지 않은 모호한 항균 주장으로 대중의 건강보호(다)에 해당

광고 ⑥ 필터 원단으로 실험한 것이라면 적법하나, 제품자체로 시험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대광고에 해당

⑦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광고) '항균 코팅막'은 제품보호를 언급하지 않은 모호한 항균 주장으로 대중의 건강보호(다)에 해당

권고 · 사이버몰에서 "제품명"에 "항균"을 추가한 것 삭제
· ①, ②, ⑤ 광고에서 '99.9%'라는 구체적 효과·효능 주장 표현 삭제
· ①, ③, ④, ⑤, ⑦ 광고는 '항균'대신 '항균처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제품보호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모호하지 않은 표현으로 수정. 예를 들어 '항균처리로 필터에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 ⑥번 광고는 과대광고 가능성이 우려될 경우 '필터에 항균처리가 되어 있어 미생물 번식을 막아줍니다' 등의 표현으로 수정

1-4

카매트

제품명 | 코일 카매트

사이버몰 판매 제품명 | 항균 코일 카매트



광고 문구

- ① 항균·항바이러스·탈취 효과!
- ② 더러운 카매트에서 퍼지는 미세먼지와 유해균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나와 가족이 호흡하는 공간 항균·탈취 효과로 쾌적하니까
- ③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세균·곰팡이에서 안전하니까
- ④ 강력한 항균효과
- ⑤ 항균, 박테리아, 병원성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사멸
- ⑥ 각종 유해균 제거. 강력한 항균·항바이러스 효과
- ⑦ 기능에 항균을 더하다
- ⑧ 탑승시 각종 오염과 세균에 노출되어 있는 자동차 매트. 환기와 공기청정기만으로 각종 바이러스 및 각종 유해균들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 ⑨ 코일매트 장착 전후 실내공기 비교. 모든 세균 및 유해물질 99.9% 제거 확인
- ⑩ 일반 살균제와 달리 한 번의 코팅만으로도 지속적인 유해한 세균 및 바이러스를 사멸·분해 제거 효과를 나타냄

검토결과 및 권고

제품명	제조사에서 사용한 제품명은 문제 없으나, 사이버몰에서 통신중계판매업자가 제품명에 항균을 추가함으로써 살생물기능이 '주기능'인 살생물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광고	<p>①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광고) '항균' 등 제품보호를 언급하지 않은 모호한 주장으로 대중의 건강보호(다)에 해당하며, 항바이러스는 대중의 건강보호(나)에 해당하여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 불가한 표현임.</p> <p>②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광고) 유해균을 항균효과로 제거한다는 주장으로 대중의 건강보호(나)에 해당, 제품보호를 언급하지 않은 '항균 효과'라는 모호한 주장으로 대중의 건강보호(다)에 해당</p> <p>③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광고) 안전하다는 것은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므로, 대중의 건강보호(가)에 해당</p> <p>④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광고) '항균'을 단독적으로 사용하면서 제품보호를 언급하지 않은 모호한 항균주장으로 대중의 건강보호(다)에 해당</p> <p>⑤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광고) '병원성 세균'이라는 용어는 대중의 건강보호(나)에 해당</p> <p>⑥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광고) 유해균 제거는 살균으로 오인될 수 있어 주기능(가)에 해당하고, '항균' 등 제품보호를 언급하지 않은 모호한 항균주장으로 대중의 건강보호(다)에 해당, 항바이러스는 대중의 건강보호(나)에 해당하여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 불가한 표현임.</p> <p>⑦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광고) 제품보호가 언급되지 않은 모호한 항균주장으로 대중의 건강보호(다)에 해당</p> <p>⑧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광고) 유해세균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하여 주기능(가)에 해당, 각종 바이러스 및 각종 유해균을 제거한다는 주장이므로 대중의 건강보호(나)에 해당</p> <p>⑨ 과대광고. 부유세균이 82.0 CFU/m³에서 68.6 CFU/m³로 줄어들었는데 99.9% 제거하였다고 함</p> <p>⑩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광고) 유해한 세균 및 바이러스의 사멸기능을 주장하므로 살균에 해당. 주기능(가), (사람에) 유해한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한다는 주장이므로 대중의 건강보호(나)에 해당</p>

- 권고
- 사이버몰에서 “제품명”에 “항균”을 추가한 것 삭제
 - ①, ②, ③, ⑤, ⑥, ⑧, ⑩ 광고에서 ‘유해 세균 및 유해 바이러스 제거’ ‘항바이러스’, ‘안전’ 등 부적합 용어 삭제
 - ⑥, ⑧, ⑩ 광고에서 살균을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삭제
 - 모든 광고에서 ‘항균’ 대신 ‘항균처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제품보호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모호하지 않은 표현으로 수정. 예를 들어 ‘항균처리로 매트에 미생물이 자라는 것을 억제합니다’
 - ⑨번 광고는 과대광고 가능성이 우려될 경우 ‘필터에 항균처리가 되어 있어 미생물 번식을 막아줍니다’ 등의 표현으로 수정

1-5

김서림방지 필름

제품명 | 김서림방지 필름

사이버몰 판매 제품명 |

항균 김서림방지필름 승합화물차 옆유리용세트



광고 문구

① 항균기능. 99.9%의 살균력을 가지고 있어서, 곰팡이 등 번식하는 세균을 99.9% 제거

검토결과 및 권고

제품명

제조사에서 사용한 제품명은 문제 없으나, 사이버몰에서 통신중계판매업자가 제품명에 항균을 추가함으로써, 살생물기능이 ‘주기능’인 살생물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광고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광고) ‘99.9%’라는 구체적인 효과·효능 주장은 주기능(라)에 해당하고, 살균력이라는 주기능(가)에 해당하는 표현 사용. 곰팡이 제거도 주기능(가)에 해당

권고

- 사이버몰에서 “제품명”에 “항균”을 추가한 것 삭제
- 99.9% 삭제, 살균이나 제거 등의 표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제품을 보호한다는 광고로 명확히 개선할 것. “항균처리된 필름을 사용하여 필름에 미생물이 성장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사용설명서 주장 사례



2-1

에어컨 광촉매 살균시스템

광고 문구

에어컨 작동시 발생한 응축수를 광촉매를 통해 살균 후 건조시켜 곰팡이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에어콘 냄새를 줄이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검토결과 및 권고

광고 광촉매를 통한 살균은 법 제3조제8호나목의 살생물제품에 해당

권고 · 광촉매 살균시스템은 살생물제품으로 승인 필요

2-2

에어컨 건조 장치

광고 문구

에어컨 작동시 발생한 응축수를 애프터블로우를 통해 건조시켜 곰팡이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에어콘 냄새를 줄이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검토결과 및 권고

광고 응축수를 공기접촉을 통해 건조시키는 것은 「화학제품안전법」과 무관

권고 ·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과 무관

2-3

항균처리 공조 패널

광고 문구

미세먼지 센서와 항균 처리 고성능 콤비 필터 등의 공기 청정 시스템이 실내 미세먼지를 저감시켜줍니다.

검토결과 및 권고

광고 항균처리의 효과는 주장하지 않고 항균처리사실만 언급하였으므로 적절

권고 · 항균처리의 이유나 효과를 주장하려면 필터에 미생물이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제품보호)임을 추가 설명하면 더 좋음

2-4

수납함 자외선 살균 기능

광고 문구

에어컨 작동시 발생한 응축수를 애프터블로우를 통해 건조시켜 곰팡이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에어콘 냄새를 줄이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검토결과 및 권고

광고 자외선(UV) 만을 이용한 살균은 「화학제품안전법」과 무관

권고 · 자외선 만을 이용한 살균은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과 무관
· UV 등이 촉매로 작용하여 살생물물질의 생성하는 경우 법 제3조제8호나목에 따른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므로 살생물제품 여부 확인 필요

2-5

암레스트 공기청정기 전용 필터

광고 문구

일체형 4종 활성탄 필터가 유해물질을 정밀하게 정화하며, 고성능 HEPA 필터가 2.5 미크론의 아주 미세한 오염물질까지도 99.85% 강력 제거하여 건강한 공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검토결과 및 권고

광고 항균처리와 관련한 문구 없음

권고 ·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과 무관

2-6

에어컨 필터

광고 문구

유해가스 및 오존, 배기가스를 제거하고, 곰팡이를 차단

검토결과 및 권고

광고 곰팡이를 차단하는 기제에 대한 설명이 없음

권고 · 필터가 먼지를 걸러서 차단하는 과정에서 공기 중에 부유하는 곰팡이도 함께 걸러진다고 설명하면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과 무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KAMA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New Automobile & Mobility Association



HYUNDAI



HYUNDAI
MOBIS



르노코리아자동차

KG MOBILITY